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 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	개관일	소재지	규모	공간구성	운영인력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2020.11.17.	시흥대로 12길 10-5	연면적 1,710㎡ (지상 1~3층)	1층 : 목욕탕 2층 : 박미보건지소 꿈꾸는작은도서관, 3층 : 시흥동 자치회관	9명 (총괄, 시설관리, 운영, 매표, 탕)

※ 코로나19로 인해 사우나는 22년 7월 개관

나. 위탁현황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 최초위탁 2020.7.16. ~ 2021.12.31.(1년 6개월)

2) 수탁기관 : 시흥3동주민자치회

3) 운영인력 : 9명(총괄1, 시설관리1, 운영1, 매표2, 탕4 명)

4) 위탁사무

- 가) 목욕시설 재정 및 운영관리 사무
- 나) 편익시설 전체 시설 관리 사무
- 다)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 ‘자치회’가
협약하여 정하는 사무

5) 위탁금액 : 229,857천원

다. 재계약 내용

-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2) 수탁기관 : 시흥3동주민자치회
- 3) 운영인력 : 9명(총괄1, 시설관리1, 운영1, 매표2, 탕4 명)
- 4) 위탁사무

- 가) 목욕시설 재정 및 운영관리 사무
- 나) 편익시설 전체 시설 관리 사무
- 다)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 ‘자치회’가
협약하여 정하는 사무

5)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 준	변 경
위탁기간	2022.1.1. ~ 2023.12.31.[2년간]	2024.1.1. ~ 2025.12.31.[2년간]
인 력	9명(총괄1, 시설관리1, 운영1, 매표2, 탕4명)	좌 동
위탁사무	목욕시설 등 편익시설 전체 시설 관라운영 등	좌 동
수탁기관	시흥3동주민자치회	좌 동
공 간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10-5)	좌 동
예 산	229,857천원	252,465천원(미정)

3. 재계약 사유

가. 재계약 추진 필요성

- 1) 시흥3동주민자치회는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시설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2) 매월 위탁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에 따라 원활한 위탁 사업을 추진중임
- 3)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그간의 운영성과가 양호하며 민간위탁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필요

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적정(87점)

1) 성과평가 개요

- 추진근거 :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평가)
- 평가기간 : 2023. 9. 14. ~ 9. 15.
- 평가대상 : 시흥3동 주민자치회
- 평가내용 :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
 - ▶ 공통분야 : 사업운영비전, 재정운영효율성, 조직운영효율성, 사회적가치, 주민만족도
 - ▶ 개별분야 : 사업운영, 시설관리, 개선노력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

2) 평가결과 : 87점(우수) ⇒ 재위탁 추진

4.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 ① 주민편익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 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자치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